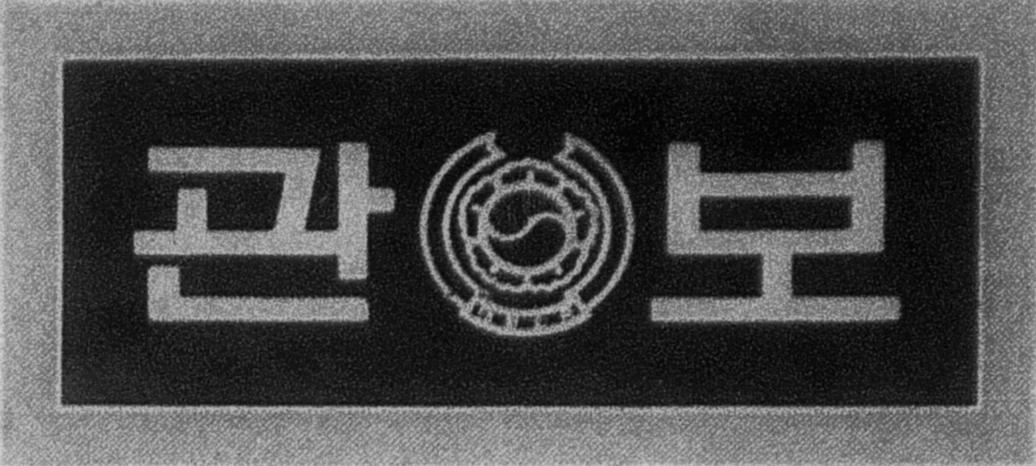


대한민국정부

발행 총무처 (편집 ☎ 720-4331)
보급 ☎ 754-433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771호(그2) 1987. 10. 29 (목)

헌 법

○대한민국헌법개정공포 2

회								
람								

헌 법

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7년 10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정 렬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정 인	용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 광	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 상	희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사 공	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 해	창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정 호	용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서 명	원
국무위원	체육부장관	조 상	호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김 주	호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나 응	배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 창	락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이 규	효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이 해	원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이 헌	기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차 규	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오 명	희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 응	희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 기	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 공	식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허 문	도
국무위원	정무장관(제 1)	이 종	률

大韓民國憲法改正

大韓民國憲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韓民國憲法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10月29日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 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保障된다.
-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 ③政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

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行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行위가 아닌 親族의 行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 21 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2 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 23 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行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 24 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

第 25 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

任權을 가진다.

第 26 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 27 條 ①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 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 28 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9 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

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が 戰鬥·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 30 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 31 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障된다.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32 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の 保障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적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적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 35 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 36 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の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の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 37 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

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 38 條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 39 條 ①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 3 章 國 會

第 40 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 41 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42 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 43 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 44 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 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 45 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 46 條 ①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 47 條 ①國회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集會되며, 國회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の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 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 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 48 條 國회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 49 條 國회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 50 條 ①國회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51 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 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2 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 53 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 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 1 項의 期間 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 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 1 項의 期間 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 4 項과 第 5 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 5 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 4 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 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 日

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 54 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 日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 日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 55 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56 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 57 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を 設置할 수 없다.

第 58 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

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 59 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 60 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 61 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62 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 63 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 分の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 64 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 2 項과 第 3 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 65 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監查院長·監查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 分の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 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 總數의 3分の 1 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 전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②大統領이 關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第 69 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 70 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 71 條 大統領이 關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 72 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 73 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 74 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 75 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 第 76 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 ③大統領은 第 1 項과 第 2 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第 3 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 ⑤大統領은 第 3 項과 第 4 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 第 77 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 78 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 79 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80 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 81 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 82 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 83 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 84 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 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 85 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 2 節 行 政 府

第 1 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 86 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 87 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 2 款 國務會議

第 88 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은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の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
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
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
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
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
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부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부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부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法 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들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들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 106 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重大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 107 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적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 108 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109 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10 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

事法院을 들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中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 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の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舉管理

第114條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公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の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選舉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115 條 ①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작성 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 116 條 ①選舉運動은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舉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 8 章 地方自治

第 117 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 118 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9 章 經 濟

第 119 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 120 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 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 121 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の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여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 122 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 123 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均衡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추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の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舉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2月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

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 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主要骨子

1.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 理念의 계승 및 祖國의 民主改革의 使命을 명시함(前文).
2. 在外國民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規定함(第2條 第2項).
3. 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 여 추진하는 규정을 新設함(第4條).
4.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 遵守를 명시함(第5條第2項).
5. 政黨은 組織·活動 외에 그 目的도 民主的이어야 한다 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政黨의 解散은 憲法裁判所의 審 判에 따르도록 함(第8條第2項 및 第4項).
6.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 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逮捕· 拘束·押收·搜索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도록 함(第12條 第1項 및 第3項).
7. 逮捕·拘束時 그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告 知할 義務 및 家族등에게 그 이유·日時·場所를 통지할 義 務規定을 新設함(第12條第5項).
8. 모든 拘束者에 대하여 拘束適否審査請求가 가능하도록 함 (第12條第6項).
9.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의 禁止 및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禁止 規定을 新設함(第21條第2項).

- 10 .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에 필요한 사항을 法律로 정하도록 함 (第 21 條第 3 項).
- 11 . 科學技術者의 權利를 法律로써 보호하도록 함 (第 22 條第 2 項).
- 12 . 財産權의 收用등에 대하여 法律의 規定에 의한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도록 함 (第 23 條第 3 項).
- 13 . 軍事施設에 관한 罪를 범한 民間人에 대하여는 軍事法院의 裁判管轄에서 제외함 (第 27 條第 2 項).
- 14 .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도록 함 (第 27 條第 5 項).
- 15 . 刑事被疑者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은 경우에도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刑事補償制度를 확대함 (第 28 條).
- 16 .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被害를 받은 國民에 대한 國家救助制度를 新設함 (第 30 條).
- 17 . 大學의 自律性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함 (第 31 條第 4 項).
- 18 . 勤勞者의 最低賃金制를 실시하도록 함 (第 32 條第 1 項).
- 19 .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第 32 條第 4 項).

20. 團體行動權 행사의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하고,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第33條第1項 및 第3項).
21.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向上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實施할 義務 및 災害豫防努力義務를 國家에 賦課함(第34條第3項·第4項 및 第6項).
22. 環境權 規定에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住宅開發政策의 실시를 추가하여 規定함(第35條第3項).
23. 婚姻·家族·健康에 관한 權利에 母性保護 規定을 추가 함(第36條第2項).
24. 國會臨時會 召集要件을 “在籍議員 3分の1 이상”에서 “在籍議員 4分の1 이상”으로 緩和하고, 定期會 會期를 “90日”에서 “100日”로 연장하였으며, 年間開會日數 制限 規定을 削除하고, 大統領이 요구한 臨時會에서의 處理案件 制限規定을 削除함(第47條).
25.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도록 國政監査權을 復活하고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는 法律로 정하도록 함(第61條).
26. 國會의 國務總理·國務委員에 대한 解任議決權을 解任 建議權으로 變更함(第63條).

27.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하도록 하고,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경우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會議에서 當選者를 決定하도록 하며, 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選舉權者 總數의 3分の 1 이상 得票하여야 當選되도록 함(第 67 條第 1 項·第 2 項 및 第 3 項).
28. 大統領의 被選舉權이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 歲에 達한 者로 함(第 67 條第 4 項).
29. 大統領의 後任者選舉는 任期滿了 70 日 내지 40 日 전에 하되,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60 日 이내에 하도록 함(第 68 條).
30. 大統領의 任期를 5 年 單任으로 함(第 70 條).
31. 大統領의 非常措置權을 削除하고,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權과 緊急命令權을 大統領에게 부여함(第 76 條).
32.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削除함(중전 第 57 條).
33. 大統領의 權限調整에 따라 國務會議의 審議事項을 變更함(第 89 條).
34. “國政諮問會議”는 “國家元老諮問會議”로,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는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로 名稱을 變更함(第 90 條 및 第 92 條).
35.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 國民經濟諮問會議를 新設함(第 93 條).

36. “大法院判事”를 “大法官”으로 하고,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함 (第102條第2項 및 第104條第2項).
37. 一般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하도록 함 (第104條第3項).
38.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 單任으로 하며,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함 (第105條第1項 및 第2項).
39.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함 (第106條第1項).
40. “軍法會議”를 “軍事法院”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의 單審制에 있어서 死刑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 (第110條).
41. 憲法委員會를 폐지하고, 憲法裁判所를 新設하여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彈劾의 審判, 政黨의 解散審判 및 國家機關相互間등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과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管掌하도록 함 (第111條第1項).
42.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大統領이 任命하되, 9人 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하고 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任命하도록 함 (第111條第2項·第3項 및 第4項).
43.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수 있도록 하며,

- 政黨加入을 禁止하고,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함 (第 112 條).
44.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 彈劾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6人 이상의 贊成을 요하도록 함 (第 113 條 第 1 項).
45.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의 任期를 現行 5年에서 6年으로 연장하고,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도록 함 (第 114 條 第 3 項 · 第 5 項 및 第 6 項).
46.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分配를 유지하고, 市場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함 (第 119 條 第 2 項).
47. 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를 금지함 (第 121 條 第 1 項).
48. 農業生産性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 이용을 위하여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第 121 條 第 2 項).
49. 國土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된다는 점을 명시함 (第 122 條).
50. 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

- 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에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도록 함(第123條第1項).
51. 國家의 균형있는 地域經濟育成義務를 新設함(第123條第2項).
52. 國家는 農水産物の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하도록 함(第123條第4項).
53. 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의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함(第123條第5項).
54.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함(第127條第1項).
55. 이 憲法의 施行日을 1988年2月25日로 하고, 이 憲法施行에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전에 할 수 있도록 함(附則 第1條).
56.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함(附則 第2條).
57.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최초의 國會議員選舉후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하도록 하고,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 任期는 최초의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함 (附則 第3條)

58.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고,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하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며, 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하도록 함 (附則 第4條)

59.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함 (附則 第5條)

60.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하도록 함 (附則 第6條)

國民精神教育9大德目

뜻뜻한 韓國人

主	人	精	神
名	譽	心	
道	德	心	

다함께 사는 보람

協	同	精	神
使	命	感	
遵	法	精	神

나라와 겨레의 나아갈 길

愛	國	心	
反	共	精	神
統	一	意	志